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73
----------	-------

발의연월일 : 2025. 9. 30.

발 의 자 : 이종욱 · 송언석 · 최은석
김상훈 · 박덕흠 · 이달희
서천호 · 조승환 · 김도읍
박수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각 교섭단체별로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를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면, 위원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관행임. 그러나 최근 위원장이 위원회에 간사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간사 선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한편 현행법은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 및 개선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 간사의 선임 및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개선에 관하여 그동안 이루어져 온 관행을 제도화함으로써 법률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7조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간사”를 “소속 위원 중에서 추천하는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간사를 선임하고 위원장은 이를 즉시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57조제1항 후단 중 “소위원회”를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합의하여 선임 및 개선하며, 소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간사의 선임 및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개선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간사를 선임하거나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 및 개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각 교 섭단체별로 <u>간사</u> 1명을 둔다.	제50조(간사) ① ----- ----- <u>소속 위원 중에서</u> <u>추천하는 간사</u> -----.
② <u>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u> <u>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u>	② 제1항의 간사를 선임하고 위원장은 이를 즉시 본회의에 <u>보고한다.</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 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 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 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u>소위원회</u> 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 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소위원회) ① ----- ----- ----- ----- ----- ----- <u>소위원회의</u> <u>위원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u> <u>의 간사와 합의하여 선임 및</u> <u>개선하며, 소위원회</u> ----- ----- -----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